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새마을금고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2025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

- 1)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: 5억원 이상
- 2). 주된 사무소가 시(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소재하는 경우: 3억원 이상
- 3) 주된 사무소가 읍·면(광역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·면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소재하는 경우: 1억원 이상

나.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

- 1)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: 10억원 이상
- 2)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경우: 6억원 이상
- 3) 주된 사무소가 읍·면에 소재하는 경우: 2억원 이상

다. 2028년 7월 1일 이후로 설립되는 지역금고

- 1)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: 20억 이상

- 2)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경우: 10억원 이상
- 3) 주된 사무소가 읍·면에 소재하는 경우: 5억원 이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인가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2025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로서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2028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로서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는 2028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인가의 세부 요건) ① 법 제 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(100명 이상이어야 한다)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(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)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.	제4조(인가의 세부 요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지역금고의 경우	1. -----
가.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: 5억원 이상	가. 2025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
나. 주된 사무소가 시(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)에 소재하는 경우: 3억원 이상	1)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: 5억원 이상
다. 주된 사무소가 읍·면(광역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·면을 포함한다)에 소재하는 경우: 1억원 이상	2). 주된 사무소가 시(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소재하는 경우: 3억원 이상
	3) 주된 사무소가 읍·면(광역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·면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소재하

2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는 경우: 1억원 이상 <u>나.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금고</u> 1)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: 10억원 이상 2)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경우: 6억원 이상 3) 주된 사무소가 읍·면에 소재하는 경우: 2억원 이상 <u>다. 2028년 7월 1일 이후로 설립되는 지역 금고</u> 1)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: 20억 이상 2)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경우: 10억원 이상 3) 주된 사무소가 읍·면에 소재하는 경우: 5억원 이상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946